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 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과오납,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77호)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영화업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등의 업무이관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수수료 환불 규정 마련 (안 제5조의2)

- 과오납,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수수료 환불 규정 신설

나.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현실화(별표1)

- 공장등록 증명 : 1통 900원 → 1건 1,000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1통 1,000원 칼라도면첨부1,500원
→ 1필지 1,000원 칼라발급 1,500원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1건 신규 4,500원 연장 2,700원
→ 1건 신규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3,000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1건 법인 27,000원 개인 18,000원
→ 1건 법인 30,000원 개인 20,000원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 1건 1,000원 → 1건 800원
-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신설) : 1건 800원
-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신설) : 1건 1,000원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 재발급(신설) : 1건 1,0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신설) : 1건 8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 36,000원 → 1건 40,000원
-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 18,000원 → 1건 20,000원
-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 36,000원 → 1건 40,000원
-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 18,000원 → 1건 2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1건 27,000원 →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9,000원 →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다. 법령개정에 따른 비디오물, 게임관련 업종추가 및 삭제와
영화상영권 변경등록, 영화업 신고,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 신설(별표1)**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건 20,000원
-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삭제)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 1건 5,000원
- 영화상영권 변경등록(신설) : 1건 10,000원
- 영화업 신고(신설) : 1건 20,000원
- 영화업 변경신고(신설) : 1건 10,000원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설) : 1건 5,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7조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77호)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7조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 원)

구분	기준	요율	비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전국통일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사실증명	1통	5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지적관계제외
· 대장문서	1통	300	
· 토지도면	1통	300	
· 건물도면	1통	300	
(2) 공부열람			지적관계제외
· 기본료	시간당	100	
· 초과료	10분당	100	
(3)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건	400	
(2) 환지예정지 분할	1건	3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건	300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300	
(5) 체비지 분할신청	1건	300	
(6)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 1,500	전국통일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6.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7. 지가관련 확인원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0 갱신 또는 기간연장 3,000	전국통일
(2)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3)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제교부		1건	500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법인30,000 개인20,000	전국통일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제교부 신청		1건	800	전국통일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20,000	
2. 농수산 관계				
(1) 내수면 어업 관계				
(가) 어업면허 신청		1건	1,600	
(나) 어업허가 신청		1건	1,000	
(다)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	
(라)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1,000	
(마)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전국통일
(바)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전국통일
(사)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 제발급		1건	1,000	전국통일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2)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	
(3) 어선관계				
(가)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전국통일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2)	주유소 등록 신청	1건	20,000	
(3)	용제 판매소 등록	1건	10,000	
4. 건설 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	
(3)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4)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5)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7)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8)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	1건	1,000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10)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1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1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13)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1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5. 문화.공보 관계			
(1)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신고	1건	50,000	
(2)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50,000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건	20,000	
(5) <삭제>			
(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7)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8)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9) 영화업 신고	1건	20,000	
(1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1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6. 보건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전국통일
(2)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전국통일
(3)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전국통일
(4)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전국통일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1건	20,000	
(6)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건	20,000	
(8) 치과기공소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7. 체육시설 관계			
(1)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전국통일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전국통일
8.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 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제외)	1건	5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신 설〉</u>	<u>제5조의2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u> <u>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u> <u>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 <u>1. 과오납한 경우</u> <u>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u> <u>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u> <u>된다.</u> <u>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2009.4.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0.9.17 대통령령 제2237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부칙 <제22377호,2010.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0.9.17>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1건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수수료	1건당 1,000원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목개정 2007.1.19]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목개정 2007.1.19]